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1.1	기관의 장
선	
람	
_	

제15호 2021. 4. 23(금)

고 시

			제2021-56호 제2021-58호								
	공		2								
0	남원시 남원시	공고 공고	제2021-892호 제2021-893호 제2021-911호 제2021-912호	: 남원시 신 : 남원시 시	혼부부 세 조례	주택 전세> 일부개정	자금 대출 <sup>©</sup> 조례안 입	기자 지원 : 법 예고 -	조례 일부기 	정조례(안) 	입법예고-17 34

○ 남원시 고시 제2021-55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

회					
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고시 제2021 - 55호

제15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0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가.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산26

나. 사 업 량 : 2,927 m²

다. 사업기간 : 2021. 04. ~ 2022. 01. 31.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아\*면 구\*\*길 \*\*8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2021 - 56호

제15호

###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0일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가.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 산26, 산26-3, 산25-2, 산25-3

나. 사 업 량: 7,023 m²

다. 사업기간 : 2021. 04. ~ 2022. 01. 31.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아\*면 구\*\*길 \*\*8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2021 - 58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소로2-208,2-209 /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남 원 시 장

2021년 04월 30일

-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사업의 명칭 :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소로3류]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동충동 54-5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L=294.0m, B=4.0~6.0m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4.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2019년 12월 ~ 2021년 12월 30일
-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붙임참조)

# 서영환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지	펀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소유자 면적 (㎡) <sub>주</sub> 소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호	소짜 (동)	분할전	분할후	목	( m²)	( m²)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비고
1	동충	45-6	45-6	도	196	1		국 (기확재정 뷔)				
2	Ш	45-2	45-16	대	13	2		남원시				
3	Ш	45-5	45-17	대	146	1		남원시				
4	Ш	45-12	45-12	도	23	23		남원시				
5	Ш	45-10	45-20	대	142	30		남원시				
6	Ш	45-9	45-19	대	129	34		남원시				
7	Ш	45-8	45-21	대	119	1		남원시				
8	Ш	45-1	45-22	대	145	5	남원시 동충동	이*덕				
9	П	473	473	도	606	306		건설부				
10	Ш	474	474	도	221	22		기획재정 부				
11	Ш	474-4	474-4	도	32	15		기획재정 부				
12	Ш	40-2	40-5	대	172	133		남원시				
13	Ш	40-1	40-4	대	63	28		남원시				
14	П	472	472	구	468	52		국(농림축 산식품부)				
15	Ш	23-19	23-30	대	99	10		남원시				
16	Ш	23-6	23-29	대	177	1	남원시 동충동	장*동				
17	П	23-5	23-28	대	90	4		남원시				

번		소재지지	번 번	ر ال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	<sup></sup> 린리명세	비
헌호	소째(동)	분할전	분할후	지 목	지적 면적 (m²)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비 고
18	п	54-3	54-17	대	248	24		남원시				
19	п	54-15	54-18	대	36	4		남원시				
20	п	54-16	54-16	도	25	25		남원시				
21	п	53-6	53-9	전	721	45		남원시				
22	П	53-1	53-7	종	939	156		남원시				
23	동충	46-3	46–10	대	274	107		남원시				
24	П	46-7	46-13	도	35	6		남원시				
25	П	46-5	46-12	대	296	32		남원시				
26	П	48-13	48–17	대	13	2	남원시 동충동	오*근 외1인				
27	П	48-4	48–16	대	265	49		남원시				
28	П	49-21	49-23	대	70	8		남원시				
29	П	49-3	49-22	대	96	14		남원시				
30	П	49	49	도	172	7	금리	손*조				
31	п	22-7	22-7	도	26	17		남원시				
32	П	22-8	22-19	도	22	13		남원시				
33	п	22-2	22-18	대	164	1		남원시				
34	п	22-12	22-20	대	76	2		남원시				
35	П	46-4	46–11	전	245	40		남원시				
36	П	47	47–1	대	413	8		남원시				
37	II	50-3	50-6	대	278	46		남원시				
38	II	50-2	50-5	대	331	5		남원시				
39	П	52-23	52-44	대	325	55		남원시				
40	П	52-11	52-43	대	355	9		남원시				
		총계			8,266	1,343						

보

## □물 건 조 서

제15호

43 =3					떠시	소 유	구 자	1	≟유권이오 권리명세 성명・주	및	비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주 소	성 명	권 리 명 세	성 명	주소	비고
			주택	연와조 스라 <u>브</u> 지붕(지하 포함)	70.32 m²	남원시 도랑길	망 김*생				
			창고	조적조 스라브지붕	4.0 m²						
			화장실	조적조 스라브지붕	1.8 m²						
			주택	조적조 스레트지붕	6.3 m²						
			창고(2층)	판넬조 판넬지붕	14.4 m²						
			까데기	경량철골 강판지붕	4.0 m²						
	남원시	450	차양	PC지붕	19.2 m²						
22	등 전기 동충동	472, 40-3	바닥포장		45.0 m²						
	000		계단		1식						
			수도간		1식						
			장독대	벽체 포함	1식						
			창고	조적조 스라브 지붕	$2.1\mathrm{m}^{\scriptscriptstyle2}$						
			화장실	판넬조 판넬지붕	5.8 m²						
			까데기	판넬지붕	9.0 m²						
			대문		1식						
			보일러실	판넬조 판넬지붕	3.24 m²						
			감나무		1주						
			17건								
			주택	목조 강판지붕	67.7 m²		남원시				
			방 및 창고	목조 강판지붕	14.4 m²						
			까데기		3.08 m²						
			바닥포장		24.0 m²						
			수도간		1식						
24	남원시	23-5	대문		1식						
4	동충동	23-3 	담장	전면	8.0m						
			담장	후면	9.0m						
			장독대		1식						
			화단		1식						
			감나무		1주						
			장미		1주						
			12건								

보

##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3.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관광시설사업소장

#### 1. 개정이유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시간 연장, 남원시민 관람료 감면 및 신규 체험 프 로그램에 대한 요금을 신설하여 운영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운영시간 연장 (안 제5조제1항ㆍ제2항)

-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매표시간 연장: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 "30분 전"
- 나.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 등 요금 신설 (안 제7조제1항, 안 별표 2)
- 다.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 (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안 별표 3 신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라. 남원시민 연간회원제 운영 조항 신설 (안 제7조제3항, 안 별표 2)
- 마. 남원시민 관람료 및 프로그램 요금 50% 감면 (안 제8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4. . ~ 2021. 5.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片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시민과학의식"을 "시민의 과학의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중한 체험기회"를 "체험기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청소년들의"를 "청소년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시간"을 "30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천문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 및 프로그램 요금(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관람료 등의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

- 2. 입장 또는 체험하기 전에 환불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 3. 천문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ㆍ취소된 경우 관람료 등 전액
-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시

③ 시장은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회원제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면제할 수 있다"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3에 따른 면제대상자
- 5. 3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30명당 1명)

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소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별표 2의 프로그램 요금도 50퍼센트를 감면함)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2]

### 남원항공우주천문대 프로그램 요금표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단	체	비고			
1박 2일 가족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	없음	・어른 : 관람료 3회 (6시간 기준) ・청소년・군인,			
1박 2일 청소년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	없음	어린이 : 관람료 3회+해시계 만들기 체험(6시간 기준)			
				어 른	7,000원				
심화프로그램	8,000원	6,000원	4,000원	청소년 • 군인	5,000원	2시간 기준			
				어린이	3,000원				
<del>VR체험</del> 프로그램	<del>  (  )  ~ </del>								
앙부일구 만들기 체험(해시계)		ļ	5,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T-50 만들기 체험 (종이비행기)		;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자이로 가상현실체험		;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패러글라이딩 가상현실체험		;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플라잉젯 가상현실체험			선 택 형 프로그램						
연간 회원제									

[별표 3]

####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 면제 대상자(제8조제2항제2호 관련)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 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 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 명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신비의 체험으로 <u>시민과</u>	제4조(업무 및 기능) 
<u>학의식</u> 제고	<u>과학의식</u> 
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u>소중한 체험기회</u> 제공	2 체험기회
3. (생 략) 4. 시민 및 <u>청소년들의</u> 과학문 화의 광장 제공	3. (현행과 같음) 4 <u>청소년들에게</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천문대의 <u>설립목적</u>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u>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u> 사업	6설립목적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5조(이용시간) ①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남	제5조(이용시간) ① <u>천문대의 이</u> 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 0시까지로 한다
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u>1시간</u> 전 까지로 한다.	② <u>30분</u>

제6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 제6조(휴관) ①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

- 1. (생략)
- 2. (생략)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생략)

제7조(관람료 등) ① 천문대의 관 제7조(관람료 등) ① 천문대를 이 람 및 체험활동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천문대 매표소에서 관람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하고, 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 식으로 한다.

②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 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 있을 경우에는 관람권을 회수하 고 관람료를 반환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 휴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 표 2에서 정한 관람료 및 프로 그램 요금(이하 "관람료 등"이 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된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금 액
- 2. 입장 또는 체험하기 전에 환 불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금 액
- 3. 천문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된 경우 관람료 등 전액
-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시

<신 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 4. (생략)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신 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1. (생략)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 하는 사람
- 3. (생략)
- 4. (생략)

<신 설>

- ③ 시장은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회원제 요금은 별 표 2와 같다.
-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 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
  - ----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3에 따른 면제대상자
  - 5. 3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30 명당 1명)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1. (현행과 같음)

<삭 제>

- 3. (현행과 같음)
- 4. (현행과 같음)
- 5. 주소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 는 사람 (별표 2의 프로그램 요금도 50퍼센트를 감면함)

####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 목록										
2. 제출자	성명(	명칭)									
2. 세 현기	주	소									
3. 의 견											
4. 기 타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1 - 893호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기준 확대 및 규제사항 개선으로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 및 정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 (조례명 및 안 제2조ㆍ제4조)
  - 1)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2) 조례의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확대함
- 나. 신혼부부의 정의를 정비하고, 청년의 정의를 추가함 (안 제2조)
- 다. 지원대상의 범위에 청년의 대상범위를 추가함 (안 제4조)
- 라. 지원 제외대상 일부를 삭제함 (안 제5조제3항 삭제)
  - 1)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을 받은 사람" 삭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의견

서를 남원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587), FAX(063-620-6719) 및 직접방문 등

####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4. .

제 출 자: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건 축 과 장

#### 1. 개정이유

지원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의 기준 확대 및 규제사항 개선으로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청년 층의 유입및 정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 (조례명 및 안 제2조ㆍ제4조)
  - 1)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2) 조례의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확대함
- 나. 신혼부부의 정의를 정비하고, 청년의 정의를 추가함 (안 제2조)
- 다. 지원대상의 범위에 청년의 대상범위를 추가함 (안 제4조)
- 라. 지원 제외대상 일부를 삭제함 (안 제5조제3항 삭제)
  - 1)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을 받은 사람" 삭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지방자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4. . ~ 2021. 5. .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로, "신혼부부의 주택"을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외의 부분 중 "기준으로"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년"을 "7년"으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원시"를 "부부 모두 남원시"로, "주소"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로, "거주하는"을 "실제거주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혼부부"를 "부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시

- 2. 남원시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1항 기준을 적용한다)
- 3.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제5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제6조제1호 중 "2퍼센트로"를 "최대 100분의 2,"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를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그 밖에 제4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신혼부부 주택"을 각각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한다.

4. 그 밖에 신청자 구비서류

제8조제1항 중 "신혼부부 주택"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신 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신혼투	부 및 >	청년	주택	전시	네자금	대를	출이자 지원	<u>신청서</u>				
וא לב וג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신 청 인	주 소			'			집전화(휴대전화	·) :				
신청구분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				
내용기재	부부합산소득	· : 급		ę	년(연소득)		(☑ 체크)					
-11 0 > 1 - 11	자	녀		명 (남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소 재	지					소 유 자					
현 황	임차금액 (	원)					임차면적(m²)					
대출현황	대출 기	관			대출잔인	ị (원)						
지급계좌	금융기	관			계좌병	번 호						
(신청인 본인명의)	신청금역	백 _			천원							
		]혼부부	및 청년	년 주택	l 전세자금	나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	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	]인 :		(서명 :	또는 날인)				
남원/	시장 귀ㅎ	}										
	신청	인 제출	출서류				담당공무원 확	·인사항				
	약서 사본 또는			. – .			민등록표 등본·초본 강보험료 납부 확인					
–	ll자금' 대출을 확					3.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디	H출 잔액),	적용이율(	이 확인되도록		로소득원천징수영수· 인관계증명서	<u>ス</u>				
표시 발급		(취시 ()				5. 지	방세 세목별(재산세)					
3. 선정인의	통장 및 신분증	(확인공)	해저자	3 H 고	동이용 동		선국기준 주택분 요청	성 (무무 각 1무)				
받이호	시 권이 어딘	એ ગો ઠો					L정보버. 레OCス	세 메ㄹ 체정				
			•		· · · · · ·		ト정부법」제36조 하는 것에 동의합					
	□ 동의합니	다.	□ 동의	하지	않습니다	. (해	당 박스에 V표	.시)				
※ 민원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u>l</u> :		(서명 또는	날인)				
	동장 확인						읍면동장	직인				
(신정자격 [	및 제출서류 확인		· : 소속		직급	성망	병 (서명 또	E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처 및 동의서

####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ğ	- 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 서명
1. 무주택 여부	본인(및 배우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2. 주택전세자금	본인(및 배우자)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	
대출 여부	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3. 대상 주택 전세	본인(및 배우자)은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여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4. 기초생활보장	본인(및 배우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수급 여부 및	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매입,	
거주 여부	전세)주택 거주자가 아님을 확인함.	
5.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만 해당)	의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ㆍ제공 등에 서약ㆍ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동의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15호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ı		ı	
번호		신	청	인		배우	자	최초 전입	전세호	현황	대출	신청액
· 변호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혼인 신고일	성명	생년 월일	선입 년월일	임차주택 소재지	임차 금액	잔액	신정액

[별지 제4호서식]

제15호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신청인				ええ	입금내역			
연번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최초 전입년월일	대상자 선정일	지급일	지급금액	

### 신・구조문대비표

시

아 혅 했 개 정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 | 제1조(목적) ------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 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 신혼 ----- 신혼 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부 및 청년의 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_\_\_\_\_.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 1. -----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 7년 -----. 2.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신 설>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2. (생 략) 제3조(대출이자 지원) 남원시장 제3조(대출이자 지원)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 ----- 신혼부부 및 청년 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시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u>기준으로</u>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 1.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2. <u>남원시</u>(이하 "시"라 한다)에
   <u>주소</u>가 되어 있고 <u>거주하는</u>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
   어진 신혼부부
- 3. <u>신혼부부</u> 합산소득 연 9천 5 백만원 이하

<신 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u>①</u>
	<u>기준</u>
1	<u>7년</u>

片

- 2. <u>부부 모두 남원시</u>-----<u>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u> <u>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u> <u>우에 한함)---</u> <u>실제 거주하는</u>
- ②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 1.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2. 남원시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 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 택 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 조제1항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 조제1항에 생계급여, 의료급 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 람
- 2.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
   는 사람
-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을 받은 사람 4. (생 략)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u>퍼센트로</u>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총 5회까지 지원
- 2. (생략)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u>신혼</u>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u>신혼</u>

3.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제5조(지원 제외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
조제1항의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
<u>람</u>
<u>&lt;삭 제&gt;</u>
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1 최
<u> 대 100분의 2,</u>
2. (현행과 같음)

보

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한다.

시

-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 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 2. (생략)
- 3. 제출서류

<신 설>

- 4. <u>그 밖에 제4조</u>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
출이자를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u>신혼부부 및 청년 주</u>
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
<u>청</u>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
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
<u>다.</u>
③
확인하여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
<u>택</u>
,
1. <u>신혼부부 및 청년</u>
2.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4. 그 밖에 신청인 구비서류
3. 제4조
<b>1</b>

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u>신혼부부 주택</u> 전세자
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
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자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 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 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 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 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 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 저 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 략)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5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⑥ 신혼부부 및 청년 주
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세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
실) ①
<u>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u> -
②・③ (현행과 같음)

보

## 참고 관련 법령 발췌

시

#### 주거기본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91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u>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u>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2. <u>주거복지 수요에 따른</u>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u>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u>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u>신혼부부·청년층</u>·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u>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u>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것
-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지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시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

##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고 제2021-911호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04.

제 출 자:남원시장

제안설명자: 재정 과장

#### 1. 개정 이유

「지방세법」(2021. 1. 1, 공포·시행)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안 제6조~8조)

현행	주민세		개정안 주민세
	개인	$\Rightarrow$	개인분
균등분	개인사업자		
	법인	$\Rightarrow$	사업소분
재산분			
종업원분		⇨	종업원분

- 나. 관련 법령・조례 인용 조항 개정사항 반영함 (안 제3조・제10조)
  - 1)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관련 인용 조항 변경 반영 (안 제3조)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제2조
  - 2)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관련 인용 조항 변경 반영 (안 제10조)「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 → 제85조의4
  -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 (안 부칙)
  - 1)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 2)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4. . ~ 2021. 5. . (20일)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평가: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장제1절(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지번, 용도"를 "용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한다.

②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시

# 신 · 구조문 대비표

혀 햀 개 정 아 제3조(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 시 제3조(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 시 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세의 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3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2 조에 따른다. 조에 따른다.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overline{D}$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 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 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 다. 다. 1. 개인의 세율 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의 세율: 10,000원

보

나.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u>재산분</u>의 세율은 같은 조 제 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u>재산분</u>의 납세의 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u>지</u> 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 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u>영 제85조의3</u>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2절 <u>사업소분</u>
제7조(세율)
<u>사업소분</u>
제8조(신고의무) <u>사업소분</u>
<u>9</u>
<u> </u>
제10조(신고의무) ①
<u>영 제85조의4</u>
<u>.</u>
② (현행과 같음)

# 붙임 현행 조례

시

##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 2018. 5. 4.]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409호, 2018. 5. 4., 일부개정]

전라북도 남원시(세정담당), 063-620-627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 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 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남원시 시세 기본 조 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주민세

##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

- 나.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시

#### 제2절 재산분

-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다.
-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경우
  -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도시지역 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5. 4.>

####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 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전부개정 2016. 2. 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관련 법령 발췌문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시

#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보

시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 목록	-	「남원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0	ᆌᇰᆌ	성명(	(명칭)					
۷.	제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티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공고 제2021-912호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04.

제 출 자:남원시장

제안설명자: 재정과장

## 1. 개정 이유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21. 1. 1, 공포·시 행) 내용을 반영하여 남원시 시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 시행규 칙을 정비하 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주민세가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여 현행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이

- 1) '균등분(개인)'은 '개인분'으로,
- 2)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 3) '종업원분'은 그대로 '종업원분'으로 과세체계가 간소화됨
- 나.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요건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ㆍ제8조)
- 1)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규정 삭제다. 주민세 정비에 따른 다른 규칙의 별지 서식 일부 개정 (안 부칙)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4. . ~ 2021. 5. . (20일)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평가: 완료(개선사항 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시

제5조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를 "주민세"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를 "주민세"로, "「지방세기본법」 제5 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남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서식목차 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2호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를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로 한다.

# ]

[별지 제3호서식]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남원시)										
일련	성 명		주 소	비과세	세 액	결 재				
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 감면 사 유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남원시)

접수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6호서식]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남원시)

과세	사업소명	납세의무자			사업소	면 적	세율	산출세액	7[사내	계
번호	MBT 0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 11 2	Cema	21 (2.11)	7 11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u>균등분</u>	제1절 <u>개인분</u>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제5조(비과세 관리)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	
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u>(균</u>	<u>(७</u>
<u>등분)</u>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	<u>인분)</u>
고 비과세 사유 등을 적어 관리	
하여야 한다.	
제2절 <u>재산분</u>	제2절 <u>사업소분</u>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	
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	
호서식의 주민세 <u>(재산분)</u> 신고	(사업소분)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	② 주민세
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u>자가</u>	<u>자가</u>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른 수정신고 및 <u>같은 법 제51조</u>	<u>같은 법 제50조</u> -
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	
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획
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주민세 <u>(재산분)</u> 과세자료 처
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
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략)

② <u>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u>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u>「지방세기본</u>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사업소분)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u>「지방세기본</u> 법」제49조 같은 법 제50조

	의 견 제 출 서							
1.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2			](명칭)					
۷.	제출자	주	소					
3.	의 견	]						
4.	기 티	-						

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